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04
----------	-------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자의 압류물품을 공매할 때,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및 선정기준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매각의뢰 물품의 매각 절차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 매각재산의 인도 (안 제13조)
-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안 제14조, 제15조)
-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의 주의할 사항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3. 9. 7. ~ 2023. 9. 27.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3】
- 방침결정문 : 【붙임 4】

[붙임 1]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역사적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2. “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2조제1호의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산시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모집·선정)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2차 심사로 구분한다.

② 1차 심사는 시의 징수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제6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매각기관을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의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매각의뢰 공매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법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8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술품등 공매방법) ① 동일 납세자의 여러 재산을 공매할 경우 이를 각각 또는 한꺼번에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갚기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납세자는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예술품등 공매중지 통보) 시장은 법 제85조의 사유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결정)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각된 예술품등

의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는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 사실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로 한다.

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에서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시행규칙 제73조의 8에 따라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5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채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3조의 8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채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

정이 취소된 경우

제17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자본금 등의 변동으로 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 체납발생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가 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전문매각기관이 최종관리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 매각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대표자 및 임직원 포함)의 매각대행 업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예술품등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예술품등을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가 과다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2.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기획경제실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징수과장 손 석 주
	담당·팀장 직위·성명	체납행정팀장 김 종 일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종 일 (행정 3986)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304호
----------	---------

제안년월일 : 2023. 12. 4.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수정이유

-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골자

- 「지방세징수법」에 대한 약칭 규정 신설 (안 제2조)
- 입법례에 맞게 자구 수정 (안 제6조)
- 인용하는 법령명을 명확히 함. (안 제14조, 제16조)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지방세징수법」”을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대행”을 “대신”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73조의8”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안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3조의8”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2조제1호의 성실납세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 ----- ----- -----.</p>
<p>제6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6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 ----- ----- 대신 ----- -----.</p> <p>② ~ ⑤ (개정안과 같음)</p>
<p>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에서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라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 -----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16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16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 -----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p> <p>1. ~ 4. (개정안과 같음)</p>